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호	2384
-----------	------

2021년 6월 16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안일자 : 2021년 5월 25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5월 31일

라. 상정일자

○ 제301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2021년 6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서울특별시장)

가. 제안이유

- 새싹따릉이 도입·운영 등으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의 이용연령 하한이 '13세 이상'으로 하향됨에 따라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감면 대상인 청소년의 연령 하한을 '13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 도입에 따른 인증제 운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을 받은 사람을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감면대상으로 추가함.

나. 주요골자

-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감면 대상 중 청소년의 연령 하한을 현행 '15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하향함(안 제12조의3제2항제1호)
-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 실시를 위한 운영 근거를 신설함(안 제13조제6항)
-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을 받은 사람에 대한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감면근거를 신설하고, 조례 개정 전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을 감면하는 부칙을 마련함(안 제12조의3제2항제6호 및 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청소년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1. 4. 1. ~ 2021. 4. 21.

○ 제출의견 : 없음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감면대상자인 청소년의 연령을 당초 “15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한편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에 따라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 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요금감면 대상 청소년의 연령조정(안 제12조의3제2항제1호 관련)

- 「청소년 기본법」 제3조1)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공공자전거 이용약관²⁾」에 따르면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은 13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공공자전거(일명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대상자는 현행 조례에서 15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³⁾

1)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공공자전거 이용약관 제5조 (회원신청)

①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만13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서울공공자전거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3) 공공자전거 청소년 회원 현황

※ 연령 적용 범위

구 분	청소년 기본법	공공자전거 이용약관	공공자전거 요금감면대상 (현행조례)
대상연령	청소년 연령 9~24세	이용가능 연령 13세 이상	15세 이상 18세 이하

- 당초 서울시는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15세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20년 「새싹따릉이⁴⁾ 시범도입」⁵⁾을 추진하면서 이용연령을 ‘13세 이상’으로 낮추어 공공자전거를 운영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이용요금 감면 대상 규정을 적용할 경우 13세 이상 15세 미만 청소년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새싹따릉이를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의 이용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됨

- 동 개정조례안은 공공자전거 요금할인 대상을 일부 확대함으로써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고,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안전하고 자유롭게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따릉이 이용확대를 위한 서울시 정책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할 것임

구 분	합 계	만13세	만14세	만15세	만16세	만17세	만18세
회원수(명)	77,423	754	1,899	5,374	12,786	24,034	325,76

※5월말 기준 공공자전거 전체회원수 : 3,057,474명

4) 일반 따릉이와 새싹 따릉이 비교(초·중학생 신장에 맞춰 모델 축소)

구 분	일반 따릉이	새싹따릉이
휠 크기	24인치 (60.96cm)	20인치 (50.8cm)
핸들 높이	106.7cm	83.4cm
안장 높이	83.7cm	71.0cm

※ 기준 : 서울시 공공자전거 QR형 뉴따릉이

5) 새싹따릉이(가칭) 시범도입·운영 추진계획(자전거정책과-5089호, '20.4.29.) : 2천대 도입

■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및 인증제 관련(안 제12조의3제2항제6호 및 제13조 관련)

- 동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와 관련하여 시장이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고,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 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서울시는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촉진하기 위해 ‘2021년 자전거 안전교육 및 인증제 운영 계획⁶⁾’을 수립하여 ‘21년부터 만 13세 이상의 안전교육 이수자가 추가적으로 필기 및 실기 시험을 통과할 경우 인증증을 발급하고, 2년간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 중에 있음
- 현행 조례에서는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교육 일체를 이수한 사람⁷⁾’을 요금 감면대상자에 포함하고 있으나, 따릉이 이용자가 교육이수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따릉이 이용요금 할인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동 개정조례안 적용시에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 운영 근거가 마련되며, 인증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관리가 이루어져 향

6) 2021년 자전거 안전교육 및 인증제 운영 계획(자전거정책과-1624호, '21.2.10.)

7) 교통안전체험장 안전교육현황(3년간) (단위:명)

구분	'18년	'19년	'20년
교육인원	134,500	106,438	4,385

※ '20년은 코로나19로 교육실적 저조

후 인증을 받은 사람이 따릉이 이용시 요금감면 혜택 부여가 물리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현행 조례 제12조의3제3항⁸⁾에서는 감면 대상자별 감면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세부사항⁹⁾을 정하였고,

다른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아 현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요금할인을 적용받은 공공자전거 이용자가 없다는 점에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임

- 한편 현행 조례 제13조제2항에서는 시장이 유아, 학생, 성인, 어르신, 장애인 등에 따라 맞춤형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개정조례안은 맞춤형 교육 대상인 ‘학생’을 ‘청소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사회적 다양성을 포함하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권고한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¹⁰⁾하고자 하는 것임

8)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의3(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감면 등)

③ 제2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별 감면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제2항7호에 따른 감면율은 100분의 50범위에서 한다.

9) 제로페이 요금감면 연장에 따른 공공자전거 제로페이 이용요금 감면을 조정계획(자전거정책과-13986, 20.12.30)

10)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알림 및 이행 요청 : 인권담당관-4286('20.4.6.)

- 서울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실시한 서울특별시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조례의 개정을 권고함(학생→청소년, 학생이 아닌 학교밖 청소년 등 사회적 다양성을 포함하는 용어 사용)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제1호 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15세”를 “13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13조제6항에 따른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을 받은 사람

제13조제2항 중 “학생”을 “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시장으로부터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의3(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감면 등)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p> <p>1. 「<u>청소년기본법</u>」에 따른 청소년 중 <u>15세</u>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p> <p>2. ~ 5. (생략)</p> <p>6. <u>공공자전거 이용자가 제13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교육 일체를 이수한 사람</u></p> <p>7.·8. (생략)</p> <p>③ (생략)</p> <p>제13조(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의 실시) ① (생략)</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유아, <u>학생</u>, 성인,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③ ~ ⑤ (생략)</p> <p><u><신 설></u></p>	<p>제12조의3(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u>청소년 기본법</u>」----- -- <u>13세</u> -----</p> <p>2. ~ 5. (현행과 같음)</p> <p>6. <u>제13조제6항에 따른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을 받은 사람</u></p> <p>7.·8.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3조(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청소년</u>----- ----- -----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⑥ <u>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교육</u></p>

현행	개정안
	<p><u>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p>